

특별채용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3
제정일자	2019.07.16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9.07.16.제정 2020.04.2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적용 및 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.)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격) 특별채용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「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및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8조의 자격을 갖추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연구업적 또는 교육경력이 우수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자
 - 2. 타 기관에서 우수한 업적과 경력을 갖춘 자
 - 3. 특정분야의 업적이 국내 · 외에서 현저히 뛰어난 자
 - 4. 본 대학교 특성화 분야 및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
 - 5. 정관 제39조의8(임시교원) ①의 각 호의 1에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제3조(절차) ①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임용을 제청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② 특별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1.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
 - 2. 면접심사
 - 3.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
 - ③ 외국인 교원의 경우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4조 (특별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) ① 총장은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심 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특별채용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, 산학처장, 사무처장, 기획실장, 입시홍보실장으로 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5조 (면접심사)** ① 면접심사 위원은 총장, 교무처장, 산학처장, 기획실장, 입시홍보실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학과 및 해당부서의 장을 면접심사 위원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



특별채용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3
제정일자	2019.07.16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2020.09.25.>

- **제6조 (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대상자)**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제출서류 및 추천 의견서를 근거로 임용대상자의 자격을 심의한다.
-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교무처장은 임용대상자를 정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제7조 (임용결정) 교무처장이 제청한 자의 임용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제8조 (교원의 직위 및 임용계약) 특별채용 전임교원의 직명 및 근무조건 등 임용계약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, 필요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『기획실』을『기획처』로 ,『산학처』를『산학취업처』로,『입시홍보실』을『입학홍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